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9. 21.(월)

국민건강보험공단, 「불법개설기관 집중·자진 신고기간」 운영

-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무장병원·면허대여약국 집중 신고 접수 -
-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...신고자 신분·신고내용 철저히 보호 -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강창희)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21일(월)부터 11월 20일(금)까지 두 달간 「불법개설기관 집중·자진 신고기간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‘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’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,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‘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’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.
-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(문서, 사진, 계좌 거래 내역 등)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.
-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,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 원*의 포상금이 지급되며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*된다.

*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('25.12.23.)에 따름

○ 아울러, 불법개설·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.

□ 신고는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, 국민권익위원회(국번없이 1398)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.

■ 불법개설 의심기관 (온라인)신고 센터 ■	
❖ ‘국민건강보험공단’ 누리집(www.nhis.or.kr) - (경로) 국민소통·참여 > 신고센터 >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> 불법개설기관 신고	
❖ ‘건강보험’ 모바일 앱 - (경로) 전체메뉴 > 국민소통·참여 > 신고센터 >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고	

□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“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”임을 강조하고, “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,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, 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·운영하는 ‘사무장병원’이나 ‘면허대여 약국’ 등을 말한다.

- <붙임> 1. 불법개설기관(의료기관·약국) 주요 유형 및 관련 법령
 2. 불법개설기관 현황 및 폐해 사례
 3. 포상금 지급 기준
 4. 정부·유관기관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링크 현황

담당 부서	요양기관지원실 조사운영부	책임자	부 장	이상준 (033-736-4401)
		담당자	팀 장	김영주 (033-736-4420)
배포 부서	홍보실 미디어소통부	책임자	부 장	차철호 (033-736-1404)
		담당자	팀 장	조정현 (033-736-1420)

□ 불법개설기관 주요 유형

■ 불법개설 의료기관 주요 유형 ■

❖ 실제개설 운영자가 비의료인인 유형

-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
-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

❖ 실제개설 운영자가 의료인인 유형

-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 개설
-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
-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
-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 개설

■ 불법개설 약국 주요 유형 ■

❖ 실제개설 운영자가 비약사인 유형

-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 개설

❖ 실제개설 운영자가 약사인 유형

-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개설

□ 의료법

제4조 (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)

-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. <신설 2012.2.1, 2019.8.27>

제4조의3 (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)

- ① 의료인은 제5조(의사 ·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), 제6조(조산사를 말한다) 및 「간호법」 제4조(간호사를 말한다)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9.20>
- ② 누구든지 제5조, 제6조 및 「간호법」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,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 <개정 2024.9.20>

제33조 (개설 등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 · 병원 · 요양병원 ·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,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, 한의사는 한방병원 ·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,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30, 2020.3.4>
1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
 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
 3.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(이하 "의료법인"이라 한다)
 4. 「민법」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,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-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·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. <신설 2009.1.30, 2012.2.1>
- ⑩ 의료기관을 개설 · 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5.12.29>

□ 약사법

제6조 (면허증 교부와 등록)

-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4.7>
-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 <신설 2020.4.7>

제20조 (약국 개설등록)

-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.

제21조 (약국의 관리의무)

-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.

붙임2

불법개설기관 현황 및 폐해 사례

□ 불법개설기관 적발 및 환수결정·징수금액 현황

2025.12.31.기준(단위: 개소, 백만원, %)

기간	적발 기관수	환수결정금액	징수금액	징수율
2009~2025년	1,805	2,916,240	256,324	8.79

□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

○ (국민 건강권 위협) 치과의사 행세하며 진료한 비의료인

비의료인(사무장)이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·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약 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음. 또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등 수천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였으며, 범행이 드러나자 면허증을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함.

○ (건강보험 재정 누수) 의료인이 병원을 임대하고 사무장병원에서 수익 챙겨

의료인 A는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세체납 처분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,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여 1년간 운영하며 허위 입원환자를 만드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. 또한 1년의 명의 대여 종료 후에는 비의료인(사무장)에게 병원공간을 임대하고 병원수익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함. 그 비의료인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함. 병원 개설명의자와 A의 아내간 허위계약서(임대차보증금 양수 및 분할상환, 채용)를 작성하여 범죄 수익을 은닉함.

○ (건전한 의료질서 파괴) 가짜 환자의 온상이 된 사무장 병원

비의료인(사무장)이 허위서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(이하 생협)의 설립 인가를 받은 뒤,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·운영한 사례로, 병원 운영 과정에서 당직 의료인 배치 규정을 지키지 않고, 마약류를 개인 금고에 관리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.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병원 자금을 횡령하였고,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·허위 진료가 반복되었음.

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25. 12. 23.>

포상금의 지급 기준(제75조제4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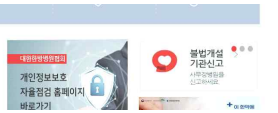
징 수 금	포 상 금
2천원 이상 3만4천원 이하	1만원
3만4천원 초과 1억원 이하	징수금의 30%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3천만원 + 1억원 초과 징수금의 20%
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	1억1천만원 + 5억원 초과 징수금의 14%
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	3억2천만원 + 20억원 초과 징수금의 8%
40억원 초과	4억8천만원 + 40억원 초과 징수금의 4%. 다만,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30억원으로 한다.

비고

1. “징수금”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.
2.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.

붙임4

정부·유관기관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링크 현황

연 번	기관명	게시이미지	링크주소
1	국민권익위원회		https://www.clean.go.kr/menu.es?mid=a10202000000
2	대한치과의사협회		https://www.kda.or.kr/kda/index.kda
3	대한간호협회		https://www.koreanursing.or.kr/kna_ko/index.do
4	대한한의사협회		https://www.akom.org/Home/Main
5	대한의료법인연합회		http://www.kfmf.or.kr/
6	대한요양병원협회		https://www.kagh.co.kr/sub05/sub01_2.php
7	대한한방병원협회		https://www.komha.or.kr/

※ 불법개설 집중·자진 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추가 설치 예정